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00. 00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와 처리할 업무를 규정(안 제1조의5)

- 1) (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) 기관별 의료자원 정보(재원 환자 수, 병상 수, 의료장비 및 인력현황 등), 감염병 환자 수용 및 전원과 관련된 정보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- 2) (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)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업무, 감염병 임상 연구, 임상치료 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업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규정
- 3) (자료제출 요청)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근거조항 마련

4) (위임규정)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5를 신설한다.

제1조의5(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법 제8조의2제4항

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(이하 “의료자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.

1. 재원 환자 수, 병상 수, 의료장비, 인력 현황 등 기관별 의료자원 정보
2. 감염병 환자 수용 및 전원(轉院)과 관련된 정보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
2. 감염병 임상 연구 및 임상치료 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업무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관련

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조의5(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(이하 “의료자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. 1. 재원 환자 수, 병상 수, 의료장비, 인력 현황 등 기관별 의료자원 정보 2. 감염병 환자 수용 및 전원(轉院)과 관련된 정보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

2. 감염병 임상 연구 및 임상치료 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업무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의료자원관리 및 감염병 정보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 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17